###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6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종배·김성원·이준석

성일종 · 강대식 · 박대출

최수진 • 이종욱 • 김승수

서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 기관 우대 채용,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 지역균형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향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역차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

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법률 제 호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나.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	2		
인재"라 한다)란 <u>지방대학의</u>	<u>다음 각</u>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lt;신 설&gt;</u>	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		
	<u> 재하는 「초・중등교육</u>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학		
	교・고등기술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에 소재		
	하는 「고등교육법」 제2		
	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		
	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		
	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u>&lt;신 설&gt;</u>	나.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		
	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